



제 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 전담 배치 의무화 >

■ 진중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417호)

2026.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 전담 배치 의무화(안 제11조의3제2항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진중오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1. 20.

다. 회 부 일 : 2025. 11.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함.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무대감독 등 공연 연출 인력이 안전관리 업무까지 겸직하는 사례가 많아, 연출업무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현장 여건으로 인해 안전관리가 소홀해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담당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공연 연출자와 근로자 등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연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 전담 배치 의무화(안 제11조의3제2항 신설)

개정안은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관리 업무 전담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안전관리조직) ① (생략)	제11조의3(안전관리조직) ① (현행과 같음)
<신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담당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현행법 제11조의3¹⁾ 및 현행법 시행령 제9조의3²⁾은 객석 수가 500석

1) 「공연법」

제11조의3(안전관리조직) 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설치기준, 구성,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또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에게 공연의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공연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조직 설치 기준>

구 분	구성 기준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록공연장	객석수 500석 이상~1천석 미만	1명	1명
	객석수 1천석 이상	1명	2명
공연장 외 공연	예상관객 1천명 이상~3천명 미만	1명	1명
	예상관객 3천명 이상	1명	2명

※ 출처 :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3 및 [별표 1]

현행법 시행령 제9조의3 및 [별표 1]에서는 공연장의 규모 또는 관람객의 수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의 최소 인원을 차등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한 공연장운영자등³⁾으로 하여금 안전총괄책

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2)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3(안전관리조직) ①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또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을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한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1] 안전관리조직의 설치기준(시행령 제9조의3제1항 관련)

1. 공연장운영자

가. 객석 수가 500석 이상 1천석 미만인 공연장의 경우: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나. 객석 수가 1천석 이상인 공연장의 경우: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2.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

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나.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제 공연 현장에서는 무대감독, 공연기획자 등 연출·기술 인력이 안전관리 업무를 겸직하는 사례가 빈번함.

특히, 공연 제작 과정은 연출, 조명, 무대 전환 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적 특성상 연출 업무가 우선시될 수밖에 없어, 안전관리가 부차적으로 취급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현행법 제11조에 따른 화재 및 재해 대처,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 설치 및 운용,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의 안전검사 확인 등 법률에 명시된 주요 안전의무 사항⁴⁾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3) 「공연법」

제10조의2(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①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무대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위하여 공연 현장에서 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②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이하 “공연장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7(방화막의 설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

형식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에게 안전관리담당자가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전담인력 확보를 통해 화재 및 그 밖의 재해 발생 시 대피 경로 확보, 방화막 등 소방시설 운용, 무대시설 안전검사 등 공연장 시설 및 공연 전반에 걸친 상시 안전 점검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이러한 전담인력의 확보는 결과적으로 공연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연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한편, 개정안이 “안전총괄책임자”에 대해서는 전담 의무를 두지 않고, “안전관리담당자”에 한해 해당 업무의 전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양자의 역할과 기능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안전총괄책임자”는 재해대처계획 수립, 안전관리조직 운영 총괄, 관

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의 규모·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는 제외한다.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검토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 한정한다.

1.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무대시설(방화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설계검토**
2. 공연장 등록 전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등록 전 안전검사”라 한다)

계기관 협조 등 관리·조정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는 직위로서 겸직으로 운영이 가능한 반면,

“안전관리담당자”는 소방 및 방화 설비 점검, 무대시설 안전검사 확인 등 실질적인 기술적 안전 조치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실무 인력이므로, 해당 업무의 전담이 전제되어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은 인력·재정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현장 안전관리의 실질적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인력 배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현행법 시행령에서 안전관리 담당자의 구체적인 직무가 아직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업무의 전담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는 데에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시행령 개정 검토와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담인력 운영에 적합한 직무를 구체화하고, 공연업계 및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제도 개선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전북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공연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전북특별자치도는 공연장의 규모, 가동률 등 개별 공연장의 운영 여건을 고려할 때 안전관리담당자가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전담인력이 있더라도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세종특별자치시는 전담업무 부여에 따른 인건비 및 정원 기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인력 부담을 고려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아울러 안전관리조직의 직무를 현행법 시행령에서 조속히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안전관리담당자를 전담인력으로 운영할 경우 국립·공립 공연장을 중심으로 신규 인건비가 발생하여 연간 약 115억원 규모의 재정 소요가 예상되며, 민간 공연장의 경우 약 23억원 정도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

공연장 객석 구분	국립		공립		민간	
	공연장 수	안전관리 담당자 수	공연장 수	안전관리 담당자 수	공연장 수	안전관리 담당자 수
500석 이상~1천석 미만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11개소	11명	157개소	157명	24개소	24명
1천석 이상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6개소	12명	66개소	132명	19개소	38명
안전관리담당자 계(A)		23명		289명		62명
연평균 임금(B) (3,110천원×12개월=37,320 천원)	37백만원		37백만원		37백만원	
산출액(A×B)	851백만원		10,693백만원		2,294백만원	

※ 고용24 ‘산업 안전원 및 위험물 관리원’ 직종 최고액 월 3,110천원 임금 적용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 의 처

02)6788-5384

참고 1

공연장 운영현황 관련 주요 통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단위: 개, %)

구분	공연장	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	
		1,000석 이상		300석~1,000석 미만		300석 미만	
		사례수	비중	사례수	비중	사례수	비중
전체		1,651	93	554	33.6	1,004	60.8
지역	서울	516	27	128	24.7	362	70.1
	경기/인천	279	23	119	42.7	137	49.1
	강원권	58	1	30	52.0	27	46.1
	충청권	147	11	52	35.3	84	57.2
	전라권	246	11	76	31.0	159	64.4
	경상권	369	17	133	36.0	220	59.5
	제주권	36	4	16	45.2	16	44.6
시설 특성	중앙정부	40	6	18	45.0	16	40.0
	문예회관	440	53	273	61.9	115	26.0
	기타[공공]	349	15	128	36.8	205	58.9
	대학로	130	0	3	2.6	127	97.4
	민간[대학로 외]	692	19	132	19.0	541	78.2
운영 주체	공공	758	288	401	52.9	69	9.2
	민간	893	716	153	17.1	24	2.7

① 객석 규모별 공연장 현황: 300석 이상 공연장 대다수를 지자체가 운영(전체의 72%, 469개소/647개소 중) / 2024년 공연예술조사 <부표 1-25>

(단위: 개, %)

구분		공연 시설	재정 자립도	재정규모									
				1억미만		1~10억 미만		10~50억 미만		50억~100억 미만		100억 이상	
				사례수	비중	사례수	비중	사례수	비중	사례수	비중	사례수	비중
전체		1,335	31.4	557	41.7	579	43.3	132	9.9	23	1.7	43	3.2
지역	서울	414	50.0	173	41.9	178	43.1	41	9.9	7	1.7	14	3.4
	경기/인천	223	18.3	105	47.0	72	32.4	28	12.5	4	2.0	14	6.1
	강원권	49	21.2	9	19.1	31	64.2	6	12.1	1	2.3	1	2.3
	충청권	121	13.2	40	32.8	66	54.8	14	11.5	0	0.0	1	0.8
	전라권	198	16.5	85	43.1	94	47.5	10	4.8	5	2.3	4	2.2
	경상권	296	21.9	120	40.7	130	43.8	34	11.5	6	2.1	6	1.9
	제주권	34	77.4	24	71.6	6	18.1	0	0.0	0	0.0	3	10.3
시설 특성	중앙정부	17	14.6	0	0.0	2	11.8	6	35.3	3	17.6	6	35.3
	문예회관	271	18.3	27	10.1	121	44.5	76	28.0	17	6.2	30	11.2
	기타[공공]	296	12.9	162	54.7	117	39.6	17	5.7	0	0.0	0	0.0
	대학로	116	90.1	82	71.1	23	19.9	10	9.0	0	0.0	0	0.0
	민간[대학로 외]	635	91.5	286	45.0	316	49.7	23	3.7	3	0.5	7	1.1
운영 주체	공공	525	16.6	164	31.3	214	40.8	94	17.8	17	3.3	35	6.7
	민간	810	80.8	393	48.5	364	45.0	39	4.8	6	0.7	8	1.0

② 공연시설 재정자립도: 문예회관 18.3%, 재정규모 10억미만 54.6% / 2024년 공연예술조사 < 부표 1-24 >

참고 2

공연장 운영인력 현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연번	지자체명	운영주체	공연장명	객석수	인력구성	
					전문인력	전문인력 중 무대인력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 문화재단	강동아트센터	850(중)	15	8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도시 관리공단	강남구민회관	512(중)	3	3
3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구 (직영)	동래문화회관	505(중) 196(소)	4	3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구 (직영)	을숙도 문화회관	709(중) 208(소)	3	2
5	대구광역시	대구문화 예술진흥원	대구문화 예술회관	1,008(중) 239(소)	14	8
6	대구광역시 남구	남구 (직영)	대덕문화전당	536(중)	6	3
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구시설 관리공단	계양문화회관	795(중)	9	3
8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 단	빛고을 시민문화회관	715(중)	10	9
9	세종특별 자치시	세종시문화 관광재단	세종문화 예술회관	830(중)	5	3
10	경기도 안성시	안성시 (직영)	안성맞춤 아트홀	991(중) 301(소)	8	6
11	경기도 안양시	안양문화 예술재단	안양아트센터	1,126(대) 382(중)	11	8
12	강원특별 자치도 강릉시	강릉시 (직영)	강릉아트센터	972(중) 385(소)	14	5
13	강원특별 자치도 횡성군	횡성군 (직영)	횡성문화 예술회관	660(중) 80(소)	7	2
14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시 (직영)	제천시 문화회관	660(중)	3	3
15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문화 관광재단	공주문예회관	629(중) 102(소)	8	3
16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시 (직영)	나주문화 예술회관	548(중)	4	1

※ ① 202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문체부) 발췌, 500석 이상 1,200석 미만 공연장 반영하여 작성

② 전문인력: 무대, 홍보, 공연, 전시, 예술교육 분야 인력 / 무대인력: 무대기계, 조명, 음향